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3일,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9.) 상정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3.)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 12. 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미애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개정안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친권자의 친권 남용 등 외에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장 등의 친권상실 신고 등 청구를 활발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아울러 현행법의 ‘친권 행사의 제한 및 친권 상실 신고 청구’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친권 상실 선고, 친권 일시 정지 선고, 친권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로 구체화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그 외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장의 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 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제12조)에서는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을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법률조항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견인 선임 청구 사유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외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지자체장의 후견인 선임 청구 사유가 명확해짐에 따라 후견인 선임 청구가 활성화되고,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 사무 수행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보호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후견인 선임 청구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앞서 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 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 발견일부터 후견인 선임 시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함.

기아로 신고된 아동의 보호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시·군·구에 보호를 의뢰하고, 시·군·구는 건강검진 후 아동을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일시보호하면서 원가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성·본창설 및 후견인 선임을 진행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결정함.

이에 따르면 기아는 발견일부터 후견인 선임 전까지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후견인 선임 청구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3~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개정안은 기아 발견일부터 지자체의 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기아의 친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양이 곤란하여 양육시설에 보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보호조치 변경 없이 시설에서 장기 양육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후견인이 없는 보호의 공백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법률에서 자동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법 체계와는 상이한 내용으로 법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